

부패방지 정책 & 가이드라인

; Anti-corruption policy & Guideline

HYBE

Table of contents

Intro	3	법령준수와 금지사항	7	기타	18
목적 및 취지	4	관련 법령 준수	8	투명한 회계처리와 승인 절차	19
정의	5	금품 등의 제공 금지	9	신고제도 및 신고자 보호	20
		부정한 금품 지급 요청에 대한 대응 수칙	10	위반에 대한 조치와 책임	21
		공직자에 대한 편의 제공	11		
		제3자에 대한 또는 제3자로부터의 편의 제공	12		
		기부 행위 관련 주의사항	14		
		비즈니스 파트너 선정시 주의사항	15		
		M&A	16		
		실사 프로세스	17		

Intro

목적 및 취지
정의

목적 및 취지

본 가이드라인은 하이브*가 글로벌 사업을 전개함에 따라 회사와 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 국가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과 국제 반부패 협약을 준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동 및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하이브의 부패방지 정책은 업무나 장소, 역할, 고용형태, 지위에 상관없이 전 세계에서 하이브를 위해 일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 됩니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은 하이브의 윤리강령에 명시된 「뇌물 및 청탁금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권장되는 행동 지침을 제시하지만,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편적이고 다소 추상적인 기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가이드라인에 없거나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반드시 유관부서(컴플라이언스실)에 자문을 구하여야 합니다.

*하이브(HQ)와 국내외의 자회사, 계열회사, 합작투자사 등을 포함합니다.

부패 방지

‘부정부패’(不淨腐敗)’라는 것은 “바르지 못하고 타락함”을 뜻하며, 이를 줄여서 흔히 ‘부패’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영역이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물질적 혹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이러한 이득을 얻도록 돕는 일체의 일탈 행위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다국적 기업이 늘어나고, 조직범죄가 국제화 되면서 UN에서는 부정부패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3년에 「반부패국제협약」이 체결되었고, 각 국가에서는 개별적으로 법률로 제정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국제적 규제나 사회적 요구에 발 맞추어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Intro

정의

'금품 등' 이란



금전과 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모든 유·무형의 이익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현금, 유가증권(상품권, 숙박권, 회원권, 할인권, 입장권, 초대권, 관람권, 주식 등), 식품, 주류, 골프 등의 접대와 향응 제공, 교통·숙박·쇼핑, 자선단체 기부, 채무 면제, 취업·인턴십 제공, 사업기회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공직자 등' 이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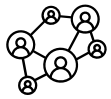
- 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
(대한민국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포함)
- 해당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자
- 해당 국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단체 또는 공공기관 업무 종사자
- 해당 국가 내 공직 후보자 및 정당에 소속된 임직원 및 정치인
- 국제기구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기타 부패방지 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

Intro

정의

'제3자' 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회사를 위하여 사업 전개, 교섭, 통관, 인허가, 세무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
- 비즈니스 파트너(회사와 사업적으로 관계가 있거나, 사업 관계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
- 언론사 및 학교법인과 그 소속 임직원
- 기타 거래 업체, 합작 투자사 등

'급행료' 란

'일상적, 반복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 등에게 업무 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법적·절차적 권한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소액의 금전이나 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급행료 제공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자 발급 및 수속 등 행정서류의 접수 및 처리
- 상품 또는 물품의 통관, 선적 및 하역

법령준수와 금지사항

관련 법령 준수

금품 등의 제공 금지

부정한 금품 지급 요청에 대한 대응 수칙

공직자에 대한 편의 제공 금지

제3자에 대한 또는 제3자로부터의 편의 제공 금지

기부

비즈니스 파트너의 선정

M&A

실사 프로세스

법령준수와 금지사항

관련 법령 준수

본 가이드라인은 OECD의 『뇌물방지협약』, UN의 『글로벌컴팩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 (FCPA)』, 영국의 『뇌물방지법(Bribery Act)』 등 전 세계 반부패 법령의 철저한 준수를 위한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하이브 구성원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각 국가의 법률을 우선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현지 법령과 본 지침이 상충되는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관행에 해당하는 행위일지라도 관련 법령이나 본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한 면책이 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 공무원 등에 대한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
- 부패방지법 :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한
- 외국공무원 뇌물방지법 : 해외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금지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신고자 비밀보장, 불이익금지, 포상



- SNA(국가반부패시스템) : 연방,주,감사,검찰,시민사회가 연계된 국가 차원의 통합 거버넌스
- LGRA(행정책임 일반법) : 공무원/법인의 뇌물, 부당계약, 영향력 행사에 대한 제재
- 연방법 형법 : 자국 공무원의 뇌물, 사익추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 UCPLA(부정경쟁방지법) : 해외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금지(기업/임직원 대상)
- 형법 : 자국 공무원의 뇌물 수수 처벌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일정 규모 기업의 내부신고 체계, 신고자 보호 의무화



- 감찰법 : 국가감찰위원회 중심으로 공직부패 전반 감찰, 조사, 처분
- AUCCL(반부정당경쟁법) : 상업적 뇌물(부정경쟁 행위) 규제
- 형법 : 뇌물 수수, 행정처분 회피 등 각종 뇌물 범죄 처벌



- FCPA(해외부패방지법) : 해외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제안,약속 금지
- FEPA(외국 공무원 갈취 처벌법) : 해외 공무원의 뇌물 요구,수수 형사 처벌
- 연방법 뇌물죄 : 연방 공무원에 대한 금품,서비스제공,약속을 통한 영향력 행사 금지



- PCA(부패방지법) : 상업조직의 뇌물 공여 책임, 공무원의 뇌물 수수 처벌
- 로크팔/로크아이윅타법 : 고위공직자 부패조사 기구 설치, 독립적 조사 권한
- 자금세탁방지법 : 부패 관련 부당이득/자산의 은닉 처벌

법령준수와 금지사항

금품 등의 제공 금지

회사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공직자, 공직자의 특수관계인(배우자, 가족 등),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 또는 제크자에게, 사업상 이익을 위한 부정한 의도로 접대 및 편의와 관련하여 금전 또는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제안해서는 안됩니다.

다음과 같은 금품 제공의 방식이 금지대상에 해당합니다.

- 현금 및 현금 등가물(상품권 등의 기프트카드) 제공
- 현물(선물, 후원금, 물품) 지급 ◦ 리베이트
- 비밀 커미션 ◦ 비공식 수수료 ◦ 급행료
- 계약, 구매 오더 또는 컨설팅 계약의 이용

해외 국가의 공직자 선물 수수 금지 규정

미국	1회 20달러, 연간 50달러를 초과하는 선물 수수 금지
일본	5,000엔 이상의 선물을 수수하는 경우 신고의무 부과
영국	25파운드~30파운드를 초과하는 선물 수수 금지

특히 부정한 의도가 없이 제공하였더라도 일부 국가에서는 반부패 법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고, 공직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한 금품 지급 행위도 뇌물죄에 준하여 형사상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도 존재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사람과 수령한 사람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상 금지 기준

- ▷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과 제공한 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
- ▷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제공 약속 행위가 있었다면, 공직자가 신고하거나 금품 등을 반환하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성립
-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 이내에서 제공 가능
(단, 가액 기준 이내라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법령준수와 금지사항

부정한 금품 지급 요청에 대한 대응 수칙

회사 구성원은 뇌물이나 부정한 금품 지급 등을 요청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거절하여야 합니다. 금품 지급 행위는 반부패 관련 법령, 회사의 윤리강령 등에 위반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러한 금품 지급 행위를 용인하지 않음을 분명히 의사표시 하고, 이러한 요청에 대해 컴플라이언스실에 신고하여 추가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안내 받도록 합니다.

부정한 금품 지급 요청에 대해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대응한 결과로 사업 지연 또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정당한 행동을 취한 구성원이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것입니다.

만약 불가피한 상황(위력에 의한 강요, 협박 등)으로 인해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컴플라이언스실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른 법령 또는 사회 상규에 따라 금품 제공이 가능한 경우

- ▷ 도서관법 :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시설·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 가능
- ▷ 문화예술진흥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 가능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금회에 연중 기부 가능
- ▷ 결핵예방법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대한결핵협회에 크리스마스쌀 모금 및 그 밖의 기부 가능
- ▷ 장학재단법 : 한국장학재단에 일정한 사업을 위한 기부 가능
- ▷ 방송법 :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장소 등을 방송사업자에게 제공 가능
- ▷ 기타 사회상규 상 가능한 경우
 - 돌잔치나 결혼식 등 기념일에 찾아온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 공직자를 둔 배우자에게 재직중인 회사가 내부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소속 직원들에게 금품 등(복지 또는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 공연 등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문화·예술·체육 등 관련분야) 기자에게 티켓 등을 제공 하는 경우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경연·추첨 등을 통하여 보상 또는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법령준수와 금지사항

공직자에 대한 편의 제공 금지

공직자에 대해서는 편의 제공 또한 뇌물 또는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공이 금지됩니다.

다음과 같은 편의 제공의 방식이 금지대상에 해당합니다.

- 항공료나 숙박비 등 출장 경비의 제공
- 관련 법령이나 통상의 수준을 초과하는 식사 또는 선물 접대, 여가활동(골프, 관람권 등) 지원
- 유흥업소, 사행업소 등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접대



만일 불가피한 상황(위력에 의한 강요, 협박 등)으로 인해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컴플라이언스실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공직자 여부 판단을 위한 유권해석 사례	
공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직 유관단체의 무보수 비상임 임원	공무원 임용 유예자
대학교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대학교 명예교수·겸임교원·초빙교원
방송사의 소속 임직원	방송/언론사의 외주 제작사 소속 임직원이나 프리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임직원	용역·도급·파견 계약을 체결한 업체 소속 직원
대학병원에 소속된 의사	봉사·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개인
외국은행의 지점장	학생

법령준수와 금지사항

제3자에 대한 또는 제3자로부터의 금품·편의 제공 금지

회사 구성원은 정당한 사업상 목적을 위해 제3자에게 선물·식사·편의를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준과 적절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3자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받거나 요구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합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 어떤 일을 하도록(또는 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인사·입찰·공모 선정 등에 있어 특정한 제3자를 유리하게 만들거나, 탈락시키기 위한 청탁 행위
- 납품·계약 등에 있어 특정한 제3자를 부당하게 개입시키거나, 부당하게 계약의 유지 또는 재계약을 요구하는 행위

만일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3자로부터 부적절한 금품 등을 제공받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컴플라이언스실에 이를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 방안에 대해 안내받도록 합니다.

제3자에게 선물·식사·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과 금액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하며, 이러한 선물·식사·편의 제공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상위직책자에게 투명하게 보고하고, 적절한 증빙을 갖추어 회계처리 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선물·식사·편의 제공은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 사회 통념을 벗어난 수준의 현금이나 현금성 유가 증권
- 과도하게 호화롭거나 사치스러운 식당이나 술집에서의 식사
- 유흥업소, 사행업소 등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접대
- 업무상 관련 없는 사적인 여가활동이나 편의 지원

법령준수와 금지사항

부정한 청탁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이 공직자 등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또는 형법상 '수뢰죄'로 의율될 수 있고, 제3자(파트너사 등)의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수증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부정한 청탁'에 대해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청탁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고 기준을 정하고 있고, 배임수증재죄 역시 마찬가지로 관점에서 "거래나 계약, 사무 처리의 청렴성"을 보호 법익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 Case]

경쟁업체를 배제하여 달라는 case	○ 대학교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피고인의 사진관을 졸업앨범 제작업자로 지정되도록 부탁하면서 향음, 금원을 제공한 사례(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도1682 판결) ○ 인공관절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에게 피고인이 자기가 수입한 인공관절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제공한 사례(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도167 판결) ○ 방송사 관계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해서라도 특정학원 소속 강사와 교재를 채택하여 수능과외방송을 하는 협약 체결을 청탁한 사례(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재량 범위 내에서 특혜를 제공해 달라는 case	○ 가요 담당 방송PD에게 특정 가수 노래를 선곡, 자주 방송함으로써 인기가 올라가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제공한 사례(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257 판결) ○ 가요 담당 방송PD가 직무상 알고 지내던 가수 매니저들로부터 약 30회에 걸쳐 금품을 받은 사례(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688 판결) ○ 사업입찰 평가위원 선정이 사실상 확정된 피고인이 컨소시엄 관계자로부터 높은 점수를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받은 사례(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도13719 판결)
규정에 반하는 부당한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case	○ 신문사 지국장이 취재기사를 본사에 송고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묵인 대가로 금전을 수취한 사례(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도 1355 판결) ○ 감정평가사인 피고인이 감정물의 감정평가액을 낮추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수령한 사례(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925 판결) ○ 회원제 골프장 예약 담당자가 부킹대행업자의 청탁에 따라 회원용 부킹권을 판매하고 대금 중 12%를 수수료로 제공받은 사례(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채용과 관련한 특혜를 제공해 달라는 case	○ A대학 설립자인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E로부터 전임교수 채용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전을 수취한 사례(대법원 2023. 2. 14. 선고 2002도6697 판결) ○ 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 2명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알려주고 수천만원의 금전을 수취한 사례(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11655 판결) ○ 공공기관 공개채용 절차 과정에서 노조위원장이 다수의 피고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청탁을 벌미로 금전을 수취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25. 1. 24. 선고 2022나2052707 판결)
업무와 관련한 묵인이나 선처를 해달라는 case	○ 은행 직원이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 대상자 물색 지시를 받고 비적격자에 대한 위장대출 묵인, 선처 부탁을 받고 금전을 수취한 사례(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2130 판결) ○ 하도급받은 건물공사와 관련하여 작업지시를 하는 피고인에게 공사 감독을 까다롭게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금전을 지급한 사례(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445 판결) ○ 논설주간 및 경제 분야 컬럼니스트인 피고인이 언론사 논설주간 사무를 이용하여 A기업 대표이사로부터 A기업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해 묵시적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유럽여행 비용을 수취한 사례(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1263 판결)

법령준수와 금지사항

기부 행위 관련 주의사항

회사의 구성원은 개인적으로 시간과 비용, 자원을 이용해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 본인의 직무와 직위, 회사의 인력과 자산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어떠한 구성원도 회사의 이름으로 또는 아티스트를 대신하여 정치적 기부를 해서는 안됩니다.

관련 법령이나 사규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적절한 승인 절차를 거쳐 기부를 진행할 수 있으며, 기부의 대상은 자선 목적의 합법적인 자선단체(또는 법인)여야 합니다.

다만, 그 기부가 사업상의 관계나 대가를 전제로 이루어지거나, 부정한 청탁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자선단체(공익법인)인지 확인하는 방법

공익법인이란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운영 목적이나 재정건전성을 기준으로 지정됩니다.

내가 기부하고 싶은 자선단체가 공익법인인지 궁금하다면 1365 기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털 바로가기](#))

그 외에도 한국가이드스타에서도 국세청에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부단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웹사이트](#)를 통해 여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공익법인이 아닌 자선단체의 경우, 기부금이 뇌물이나 자금세탁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부 전에 반드시 투명한 단체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령준수와 금지사항

비즈니스 파트너 선정시 주의사항

회사의 구성원은 비즈니스 파트너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하여 회사가 반부패 법규 위반에 따른 심각한 책임 문제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를 선정함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를 선정하는 경우, 비즈니스 파트너가 뇌물 제공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지,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계약 행위 자체가 본 지침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컴플라이언스실에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검토 과정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회사의 정책에 대해 고지하고, 관련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BP) 선정을 위한 Check-list

- ☒ BP를 선정하는 목적과 필요한 기술력·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우선 수립하고, 그 계획에 대해 직책자에게 보고합니다.
- ☒ 위 기준에 부합하는 여러 업체를 물색하고, 관련 정보(포트폴리오, 주주명부, 회사 소개서, 외부 감사보고서 등)를 수집합니다.
- ☒ 사업장 주소의 거리뷰를 확인하거나 실사를 진행하여 실체가 있는지, 유령법인 또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 ☒ 주요 임직원이나 주주 중에서 공직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입찰을 진행하거나,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투명한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거래 조건을 제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 특정 부서나 개인에게 선정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합니다.
- ☒ 선정 과정이나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를 파악하고, 이들의 이해 충돌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BP와 구성원 간의 혈연·지연 관계 등)
- ☒ 모든 평가 과정(평가 점수, 회의록, 결정 사유 등)을 가급적 상세하게 기록하여 문서화 하고, 계약 관련 기안에 이 자료를 첨부합니다.
- ☒ 선정 이후 계약 체결 과정에서 회사의 윤리강령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해 고지하고, 이에 대한 준수 의지를 확인합니다.

법령준수와 금지사항

M&A

회사가 사업적 목적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대상 회사 또는 그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공급업체, 유통업체 등)의 반부패 법규 위반으로 인한 책임이 회사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M&A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는 대상 회사 또는 그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대해 반부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만약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컴플라이언스 담당 조직에 알린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한 Check-list

- ☒ M&A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 ☒ 목표에 부합하는 잠재적 인수 대상을 리스팅 하고, 여러 정보들을 수집하여 비교 분석합니다.
- ☒ M&A 과정에는 법무, 재무, 인사, 사업전략 등 다양한 직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합니다.
- ☒ 가급적이면 M&A 과정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을 자문사로 선임합니다.
- ☒ 타겟 기업과 정보를 교환하기 전에 상호간의 기밀 유지를 위한 NDA를 체결합니다.
- ☒ M&A 과정에서는 반드시 실사(Due Diligence)를 진행합니다.
- ☒ 기업 가치평가를 진행하고,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정보나 리스크 요인들을 반영하여 인수 가격을 산정합니다.
- ☒ 인수 가격, 지급 방식, 주식 이전 조건 등 핵심 계약 조건들에 대해 협상 가능한 범위를 설정합니다.
- ☒ 보증 조건, 손해배상 조건 등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반영하여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합니다.
- ☒ 계약 체결 이후에는 통합 계획을 수립하고, 인수 대상 기업의 임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등의 사후 관리 활동을 진행합니다.

법령준수와 금지사항

실사 프로세스(Due Dilligence)

본 가이드라인은 비즈니스 파트너의 선정 또는 M&A와 관련된 업무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자격, 평판, 사업적 합리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사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실사 프로세스는 직접 방문, 설문조사, 질문지, 인터뷰, 외부 조사의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세스는 문서화하여 보고 또는 관리 되어야 합니다.

실사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공직자 등과 특수관계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지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실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본 가이드라인에 위반될 여지가 있는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서면 계약서의 작성 또는 요청한 정보 제공을 주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 상대방이 공직자 등과의 관계를 강점이라고 내세우거나, 암시하는 경우
- 불합리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보상 또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적절한 증빙 없이 현금 거래를 요구하거나, 여러 개의 계좌 혹은 제3자의 계좌, 해외 국가의 계좌에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 불명확하거나 증명되지 않은 비용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통상에 비해 빠른 결과를 보장하는 경우

[Due Diligence Check-list]

☑ 재무건전성	☑ 법률 및 규정 준수	☑ 사업 역량	☑ 기술력 및 시스템	☑ 시장 평판	☑ 거버넌스
◦ 최근 3개년도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매출 추이,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현금보유량 등 재정 안정성을 확인합니다. ◦ 납세 증명서 등을 검토하여 세금 체납 이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숨겨진 부채, 우발 채무, 비정상 거래 등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매출 및 수익성이 지속가능한 구조인지, 조작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등을 검토하여 정상적인 사업체인지 확인합니다.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권 등)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소송 및 분쟁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 있는지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환경 및 안전 등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주요 사업 포트폴리오와 매출 파이프라인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경쟁력을 확인합니다. ◦ 시장에서의 위치와 경쟁 우위는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 합니다. ◦ 주요 파트너사나 프로젝트 수행 실적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파트너사에 연락하여 평판을 조회 합니다. ◦ 주요 고객층과 공급망도 확인합니다.	◦ 보유하고 있는 기술 인증, 특허 등 기술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합니다. ◦ 기술 개발 인력 현황 및 핵심 인력을 확인하여 이들의 이탈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 생산 시설, 품질 관리 시스템 등 운영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합니다. ◦ 조직문화나 노사 관계 등을 확인하여 리스크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 업계 관계자, 경쟁사, 협력사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평판을 수집합니다. ◦ 인터넷 뉴스, 기업 리뷰 사이트(잡플래닛 또는 블라인드 등)나 신용평가사의 기업 평가 정보, 공시정보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를 폭넓게 확인합니다.	◦ 부정부패, 뇌물 제공, 담합 등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제재나 언론 보도 이력이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 내부 윤리 규정이나 체제가 마련되어 있는지, 임직원 대상 윤리 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타

**투명한 회계처리와 승인 절차
신고제도 및 신고자 보호
위반에 대한 조치와 책임**

투명한 회계처리와 승인 절차

회사의 구성원은 모든 거래와 자산에 대한 취득·처분의 경우, 적절한 승인 절차를 거쳐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회계처리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조 내지 변조, 조작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업무 목적으로 금품 등의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적절한 증빙과 함께 보고·승인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승인권자는 회사의 자금이나 자산이 부적절한 목적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른 기업의 부패방지법 및 회계 부정에 따른 제재 사례]

5사 (2008, 독일)	- 전 세계의 자회사를 통해 수천 개의 비밀 계좌와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 - 합법적 컨설팅 비용 등으로 가장하여 정당한 비용처럼 꾸민 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 조성 -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으로 전 세계 여러 국가(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등)에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해 계약 수주 - 독일+미국 합산 약 16억 달러(약 2조원) 수준의 벌금 부과
K사 (2022, 한국)	- 임직원에게 과도한 보너스를 지급한 후 일부를 반환받아 현금화거나 상품권 등을 대량 구매 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 - 이 과정에서 현금화에 사용된 금원을 정상적인 경비로 기록하여 재무제표 왜곡 -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은 정관계 로비에 사용되었으며, 베트남에서도 뇌물을 제공하여 공공계약을 수주 - 총 630만 달러(약 75억원) 수준의 제재와 임원 14명 형사 기소
W사 (2019, 미국)	- 멕시코, 브라질, 중국, 인도 등 여러 신흥국에서 사업 확장(매장 개발 허가, 부지 확보, 규제 회피)을 위해 정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 - 특히 멕시코 자회사는 '컨설팅 비용' 또는 '브로커 수수료' 등을 인허가 로비스트에게 지급하고, 이 돈이 뇌물로 흘러들어감 - 미국 본사에서 이 구조를 인지했으나, 이를 묵인하고 정상적인 컨설팅 비용처럼 회계 기록 - 총 2억 8천만 달러(약 3,600억원) 수준의 벌금 부과
5사 (2019, 한국)	-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 및 그 계열사에 설비 공급 계약을 따내기 위해 뇌물 제공 - 현지 브로커(메이전트)를 통해 페트로브라스 고위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전달, 이 비용들은 합법적인 중개 수수료로 회계 기록되어 회계 부정으로 간주됨 - 미국+브라질 합산 약 7,500만 달러(약 950억원) 수준의 벌금 부과
G사 (2014, 영국)	-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제약회사인 G사는 중국을 핵심 신흥시장으로 보고, 공격적으로 영업을 확대 - G사의 중국 소재 자회사는 여행사, 컨설팅사와 같은 제3자를 통해 '학술 세미나 개최비, 학술 행사비, 컨설팅비' 등으로 위장하여 허위의 청구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 -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을 통해 의사·병원·정부관계자에게 의약품 처방 및 판매 확대를 위한 리베이트와 접대를 제공 - 중국+미국 합산 약 5억 2,000만 달러(약 7,000억) 수준의 제재와 임원 다수 해임

신고제도 및 신고자 보호

회사의 구성원은 업무 과정에서 본 지침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컴플라이언스실 또는 [HYBE 제보센터](#)를 통해 신고합니다.

회사는 신고내용과 신고자의 신상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며, 그 신고로 인하여 관련자가 인사상·업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과 조사 과정에 협조한 사람 등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보복이나 협박 등은 절대 금지됩니다.

법률에 따른 신고자 포상제도

각 국가에서는 부패방지 관련 법에서 기업 및 정부의 부패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내외부의 제보자에 대한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미국의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DOJ)에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미국 또는 외국 회사에서 증권법 또는 부패방지법 위반을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 신고가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고, SEC의 벌금 또는 추징금으로 이어지는 경우
- 회수금의 10~30%를 범위에서, 최소 1만 달러 이상의 포상 금액을 지급
- 2014년 한 내부고발자가 부패방지법 위반 기업을 신고해 약 3,000만 달러 포상금을 받음
- DOJ는 금전 포상 보다 신고자에게 감형 또는 면책을 제공

▷ 대한민국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부패·뇌물·횡령 등을 대상으로
- 신고로 공공재정 환수, 피해 회복이 확인되는 경우
- 회수금의 30% 이내에서 포상 금액을 지급

회사의 신고자 보호 제도

회사는 다음과 같이 신고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하이브 윤리강령 제37조(내부고발자 보호)

회사는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 등의 사실을 신고한 구성원이 그 신고로 인해 어떠한 인사상·업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 하이브 제보채널 운영 지침 제8조(제보·신고자 신분 보호)

- ① 구성원은 누구라도 제보·신고자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만약 알게 되더라도 타인에게 제보·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암시하거나, 공유·공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② 제보·신고 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제보·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사전에 당사자에게 신분 공개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제 1항을 위반하여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 관리 담당자는 노출 경로를 조사하여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보·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신분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리 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신분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 담당자는 감사위원회 및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회사는 제보·신고자에게 제보·신고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이하 '불이익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에 대한 조치와 책임

회사는 본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컴플라이언스실에 신고하지 않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윤리강령이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적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위반은 고용계약 위반,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엄중한 인사조치나 사업 관계 종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형사상의 책임이 수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본 가이드라인 위반 사실을 보고 받거나 인지한 관리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관리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부패방지정책을 준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목적	상세 설명	기대 효과
법적 책임 회피	임직원이 뇌물, 접대, 회계조작 등의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한 만큼 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이나 벌금, 민사상 제재 위험을 줄일 수 있음	법적 제재를 회피하거나, 회사 및 개인이 민·형사 소송 등의 법적 분쟁에서 방어 근거를 확보
재무·회계 신뢰성 확보	모든 거래·비용·지출 기록을 투명하게 장부에 반영함으로써 비자금이나 허위 비용을 예방	- 재무제표의 정확성·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외부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 - 이를 통해 자금조달 및 금융거래에 안정성도 확보
기업 평판 보호	- 부패 사건 발생 시 언론, SNS 등을 통해 보도가 확산 - 그 과정에서 허위, 루머도 발생 - 고객이나 거래처, 투자자 등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져 기업 이미지 훼손	- 부패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브랜드 가치 보호, 고객과 거래처의 신뢰 유지 - 매출이나 주가 하락 예방 가능
리스크 조기 발견·예방	내부감사, 모니터링, 신고 시스템 등을 통해 부정부패 행위를 조기에 발견	-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에 대응 할 수 있는 기회 - 조기에 발견 할 수록 문제 해결에 필요한 비용이나 리스크가 낮아져 법적·재무적 손실 예방
글로벌 비즈니스의 지속	부패방지법 준수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 해외 거래, 투자, 다국적 계약 등에서 제한 없는 사업 활동 가능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해외 시장 및 투자자의 신뢰 확보

End of document